



---

# 의정활동보고서

---



제283회 임시회(2016. 3. 14 ~ 3. 25)



경 상 북 도 의 회



## 신청사 첫 본회의 기 념 사

백두대간의 굳건한 정기가 서려있는 검무산 아래에서 1952년 초대 도의회 개원 이래 64년이 지난 오늘 이곳 안동·예천 신청사에서 역사적인 도의회 첫 개회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으면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진정 도민의 품속에서 도민과 한 덩어리가 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세월이 흘러 백년, 아니 천년 뒤 경북의 역사 속 인물로, 그리고 신도청시대를 연 자랑스런 주인공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곳을 지향하고 개척하고자 노력할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낸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앞으로 300만 도민의 꿈과 행복, 그리고 찬란한 경북의 새로운 천년 역사 창조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신도청 시대를 활짝 열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신청사 의사당에서의 첫 개회를 하게 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협력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 우리 경북 새천년의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 나가는 선진의회를 보여 주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대 진

# 차 례

I. 개 황	7
II. 의사일정	9
III. 의안처리	13
IV. 민원처리	14
V. 본회의 보고사항	16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9
□ 김창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9
□ 황병직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33
□ 이운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42
□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	60
□ 남천희 의원(건설소방위원회)	76
VII. 5분 자유발언	87
□ 이수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87
□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90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94
□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98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03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 례 안( 7건) .....	109
<input type="checkbox"/> 결 의 안( 1건) .....	141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는 2016년 3월 14일 13시 40분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25일까지 12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5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3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14일(금) 13시 40분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화) 14시에 개의하여 전날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금) 11시에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과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는 안동 신청사에서 처음 열린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이 도입된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신청사 첫 본회의 기념행사에는 60명의 도의원과 집행부가 참석하여 기념식수와 300만 도민의 꿈과 행복, 찬란한 경북의 새로운 천년 역사 창조를 위해 모두 협력하여 선진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퍼포먼스를 가졌다.

다음 회기는 제284회 임시회로 2016년 4월 22일 14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 II. 의사일정

###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 다. 집회일시 : 2016년 3월 14일(월) 13:40

###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6년 3월 14일 ~ 3월 25일(12일간)
-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41회)
  - 위원회

(단위 : 횟수)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8	1	1	-	-	1	1	1	-	3
누 계	216	16	29	29	24	22	23	23	34	16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동

####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4(월) 13:4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일반사항 보고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li> <li>○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li> <li>○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li> <l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창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li> <li>▪ 황병직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li> <li>▪ 이운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li> </ul> </li> </ul>	
3. 15(화) 14: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회의 건</li> <l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희영 의원(농수산위원회)</li> <li>▪ 남전희 의원(건설소방위원회)</li> </ul> </li> </ul>	
3. 25(금)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수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li> <li>○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li> <li>○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li> <li>○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li> <li>○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li> </ul>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li> <li>○ 경상북도 초등학교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li> </ul>	

## 나.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14(월) 16:5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2016년 의장표창 운영계획 보고의 건	

###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14(월) 17: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14(월) 17: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15(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5(화) 10: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5(화) 16:4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2016년 주요업무보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5(화) 11: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2016년 주요업무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5(화) 16:30 (제5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 Ⅲ. 의안처리

#### 제10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처리 (가+나+다)	의결					철회 (나)	보류 (다)	비고
			계 (가)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2 (334)	12 (334)	12 (329)	11 (288)	1 (39)	0 (2)		0 (4)	0 (1)	
조 례 안	소 계	7 (210)	7 (210)	7 (205)	6 (179)	1 (24)	0 (2)		0 (4)	0 (1)
	의 회 제 안	2 (100)	2 (100)	2 (97)	2 (86)	0 (11)			0 (2)	0 (1)
	도지사 제 출	1 (75)	1 (75)	1 (75)	1 (66)	0 (9)				
	교육감 제 출	4 (35)	4 (35)	4 (33)	3 (27)	1 (4)	0 (2)		0 (2)	
규 칙 안	0 (2)	0 (2)	0 (2)	0 (2)						
예산·결산	1 (17)	1 (17)	1 (17)	1 (8)	0 (9)					
동의·승인	0 (23)	0 (23)	0 (23)	0 (17)	0 (6)					
건의안	0 (1)	0 (1)	0 (1)	0 (1)						
결의안	1 (15)	1 (15)	1 (15)	1 (15)						
기 타 안	3 (66)	3 (66)	3 (66)	3 (66)						

## IV. 민원처리

###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55)	(29)	(4)	(2)	3 (9)	(2)	(4)	(3)		(2)
의회운영	(1)	(1)								
기경계획	(2)						(2)			
행정보건의복지	(10)	(4)	(4)		(1)		(1)			
문화환경	(6)	(5)						(1)		
농수산	(3)	(2)					(1)			
건설소방	3 (24)	(11)		(2)	3 (8)			(2)		(1)
교육	(8)	(5)				(2)				(1)
특별위원회	(1)	(1)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 나. 처 리

(단위: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송	
계	3 (54)	2 (53)	1 (1)			1
의회운영	(1)	(1)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10)	(10)				
문화환경	(6)	(6)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3 (23)	2 (22)	1 (1)			1
교 육	1 (8)	1 (8)				
특별위원회	(1)	(1)				

※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8건 (조례안 7, 결의안 1)

2. 처리안건 : 8건

○ 가결 8건 - 조례안 7, 결의안 1

3.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안 : 2건

(1)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16. 3. 3, 홍진규 의원 외 7명)

(2)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 3. 3, 김수용 의원 외 10명)

#### 4. 의안접수 내용 : 조례안 7건, 결의안 1

제출(발의)자 (접수일)	안건명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016. 3. 15)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운영 위원회
도지사 (2016. 3.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위원회
홍진규 의원 외 7명 (2016. 3. 3)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 위원회
김수용 의원 외 10명 (2016. 3. 3)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위원회
교육감 (2016. 3. 2)	경상북도 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교육 위원회
교육감 (2016. 3. 2)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16. 3. 2)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16. 3.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조례공포 사항 : 7건

이송일	이송처	건 명	공포일
'16. 3. 28	경상북도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4. 14 (제3763호)
"	"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16. 4. 14 (제3764호)
"	"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 4. 14 (제3765호)
"	경상북도 교 육 청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2016. 4. 11 (제3759호)
"	"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4. 11 (제3760호)
"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 4. 11 (제3761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4. 11 (제3762호)

## V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도청시대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청이전과 더불어 진정한 '경북세상'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형 참된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백만 도민의 뜨거운 여망을 담은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해, 새학기, 첫 출발을 할 때마다 특별한 소망과 다짐,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곤 합니다. 경북도민 모두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청시대에 거는 기대와 소망이 남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옹도 경북을 도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도청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경북도민의 삶을 경북 도정에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사이전이 아니라, 경북의 행정과 문화, 역사, 혼을 함께 옮긴 것으로 경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회복, 도민 대화합 실현의 출발인 것입니다.

또한 신도청시대는 제2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경북을 재설계하고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환동해와 환서해를 잇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우리는 다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에 만물이 소생하듯,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신도청시대를 힘차게 열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대구를 연결하는 대구광역시권 철도망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2014년 경부선 KTX 전용선로가 완공됨에 따라,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 구간 61.85km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17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완공될 경우, 구미-칠곡-대구-경산 간 소요시간이 40여 분

으로 단축되어, 경북·대구 도시간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구미-칠곡-대구-경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생활권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참조 p.32) 그림에서 보시듯 현재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은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 등 기존 5개 역에 사곡, 왜관공단, 서대구, 원대 등 신설 4개 역을 더하여 총 9개 역을 갖추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등 사업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광역철도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칠곡 지역 주민들은 필요성과 효용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북삼역의 광역 철도망 추가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북삼역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등 북삼역 신설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북삼역 예정지는 칠곡 북삼읍과 구미 오태동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삼지역 인구 2만 6천명, 구미 오태지역 1만 3천명, 약목지역 1만 3천명 등 현재 약 6만여 명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향후 칠곡 북삼도시개발사업 완료시 1만 5천명의 인구유입과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시 7천명의 인구유입 등 총 8만명 이상의 대폭적인 철도이용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확정된 9개 역들의 하루 이용객 수요가 적게는 337명에서 많게는 7,492명 정도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북삼역 또한 결코 이에 뒤지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북삼역 신설은 너무나 당연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민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의원은 경북도에서도 광역전철망 사업의 도내 북삼역 추가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강력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경북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전에 국토부와 북삼역 추가신설방안을 협의하였고, 당시 국토부는 역사 추가 신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시 혹은 그 이후에도 반영 가능하니, 예타 통과 이후 역사 추가 신설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지난해 예타 통과 이후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기관 중간점검회의에서도 경북도에서는 북삼역 추가 신설을 제기하였고, 경북도, 대구시, 구미, 경산, 칠곡 등 관련 지자체 회의 시에도 북삼역 추가 신설에 공동 노력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담당자들 간의 구두로만 그쳤을 뿐, 어떠한 공식적인 확답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가 도내 역사 추가신설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경북도에서는 국토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 추가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북삼역 추가신설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북삼역 신설은 8만여 명의 도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중차대한 시급사안이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북삼역 신설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며, 광역 전철망이 경북발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삼역 신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역사 추가신설을 위한 경북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2. 현재 도내에는 경부선, 대구선, 동해선, 동해남부선에 걸쳐 43개의 간이역(철도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높은 역도 있으나, 대다수 간이역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정차하는 정도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낙후정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철도는 국가시설물이기 는 하나, 도내 간이역 이용객의 대부분이 경북 도민임을 감안할 때 경북도 차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범위를 스쿨존(School Zone)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난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행과 교통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에 대한 속도 및 주차 등의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일명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사고발생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이상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등 어린이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2015년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1,149개소로 전체 대상 1,330개소의 86.4%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 비해 0.3%p(4개소)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5건에서 2015년 41건으로 무려 64% 증가하였고, 이중 만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27건으로 50% 증가하여 ‘말뿐인 어린이 보호구역, 허울뿐인 스쿨존’ 임을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2013년 76억원, 2014년 57억원, 2015년 30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자료(2014)를 살펴보면, 2013년 경북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명으로 경기(16명), 전남(14명), 경남(11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건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조차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성세대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이 증가하였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는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76%가 하교시간인 오전 12시 부터 학원 등이 마치는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굣길의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59.7%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스쿨존에 대한 무지와 안전불감증 등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전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 방식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4.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와 안전장치 등 시설관리를, 경찰에서는 속도·통행제한 등 단속을, 교육청에서는 공사나 안전장치 점검을 맡고 있어 행정의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뿐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는 관(官)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5.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교초등학교 옹벽 부실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 확보에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지난해 12. 24일 국민안전처 정부 합동점검단이 긴급현장 조사를 벌였고, 이날 도교육청, 도의원, 칠곡군 관계자 등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국민안전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나, 학생안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그동안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봄철 해빙기가 도래하면서 본 의원은 학교 옹벽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학생안전에 대한 걱정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도지사과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이의 반대급부로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폐기물의 증가, 환경오염 등은 현재를 사는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생존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문제는 지구환경을 살리고 국가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해 쓰레기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에너지회수(Recovery)의 4R정책 등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며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유한한 자원의 우리사회에서 자원순환시스템의 강화,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등 예방적 측면에서의 대책마련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생활쓰레기) 경상북도 생활쓰레기 발생량(ton/일)은 2006년 하루평균 2,427톤에서 2010년 2,679톤, 2013년 2,804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내 인구 1인당 쓰레기 하루발생량 역시 2006년 0.92kg에서 2009년 1.02kg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쓰레기 재활용률은 10년째 50% 내외 수준에서 담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증가는 1회용품 사용 증가, 포장폐기물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와 1인가구 및 소가구의 증가 등 사회인구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활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매년 증가추세인 쓰레기의 감량 방안과 40~50%대의 재활용률의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2. 현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책임이 시군에 있어 자치 단체별로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함에 따라 최적 규모의 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광역화가 필요하며, 지자체간 적절한 상호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3. (음식물쓰레기 및 해양쓰레기) 전국에서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이 하루 평균 1만 1천톤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시 연간 115조원,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연간 20조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 (환경부, 2013)입니다. 가정, 학교, 식당 등 우리 사회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2016년 1.1일부터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금지 되었습니다.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동안 해양에 투기되었던 쓰레기가 육상 처리로 전환되면서 그 처리 비용이 2~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의 경우 급식잔반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량이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한 대응방안과 쓰레기의 육상처리에 따른 산업체, 학교, 농가 등 처리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 (영농폐기물) 도내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논밭에 널려진 폐비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농약병과 쓰레기더미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쓰레기봉투 구매비용이나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까워 쓰레기를 불법무단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어, 대형 화재의 위험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발생하고 있으며, 소각한 재들을 거름짚으로 인식하고 논밭에 뿌려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의 황폐화 초래는 물론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등 수집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은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다양한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수집보상금의 현실화와 농촌지역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체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소각의 폐해,

환경오염 등 학교차원의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건설위원회 영주 출신 무소속 도의원 황병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3회 임시회에서 특히, 새롭게 단장한 의회 신청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과 도의회 및 도교육청의 이전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청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3백만 도민의 알 권리실현을 위하여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도의회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함께 정치환경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300만 도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0대 의회가 2년의 시간을 앞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집행기관의 독주에 의한 비효율적인 측면을 적절히 견제하고 지적하였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과 행정 추진에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였는지 성찰해 보면서,

경북도청이 산격동 50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백산 문수지맥의  
높이 331m 검무산 자락 331만평에 터를 잡은 호민지와 낙동강을  
품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세로 이전한 지금, 저는 새로운 경북 천년의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북 북부권의 성장거점화를 목표로  
행정타운 조성, 도시활성화, 신도시 완성이라는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4.77km<sup>2</sup>(144만 2천 900평) 부지에 주민 25,0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행정타운과 유관기관 및 주거용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을 조성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3.39km<sup>2</sup>(102만 5천 400평)에 주거와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송센터 등을 건립해 인구 44,000명을 유입하는 도시  
활성화 단계이며,

3단계는 2027년까지 2.8km<sup>2</sup>(84만 7천평)에 주거용지와 산업시설,  
특성화대학, 테마파크 등 도시자족시설을 갖춘 후 31,000명을 끌어  
들여 총 10만명의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분명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한 치의 착오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자족도시 조성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 1단계 행정타운 조성 공사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말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지 조성과 행정기관 이전은 완료되었으나 인구유입은 계획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내 입주를 시작한 현대아이파크의 489세대 중 입주율은 50% 정도 수준에 있으며, 공무원 임대아파트 총 644세대 중 2월말 기준 543세대(입주율 84.3%)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세대 중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세대는 155세대(251명)로 주소전입 세대는 3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388세대 공무원은 14일 이내 신거주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도시에 정착 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잠시 머물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도시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과 충남도에서도 유관기관 이전을 통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전남도의 경우 이전대상 기관 75개 기관 중

44개 기관(58%)만 이전하였으며, 3년이 지난 충남도의 경우 128개 기관 중 57개 기관(45%)이 이전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남도청 및 충남도청 유관기관 이전 현황〉

(기준 : 2015. 12월)

구 분	이전대상기관	이전완료	협의 또는 검토중
전남도청이전	75개	44개(58%)	39개(42%)
충남도청이전	128개	57개(45%)	71개(55%)

경상북도에서도 신도시 조성과 인구유입 정책으로 유관기관 이전·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단계 신도시 조성이 준공된 현재 이전기관 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업무용지 총 112필지 중 30필지(26.8%)만이 분양완료 되었으며, 이전기관은 15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유관기관 중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106개의 14.1%에 해당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민간아파트 입주율과 실제 공무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공무원, 저조한 이전 유관기관·단체의 부지매입 등은 1단계 당초계획 인구 25,000명에 크게 못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관기관이전 대책의 답변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 김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근 시군의 인구감소 우려와 원도심 공동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전남 남악신도시의 경우 15만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5년 12월기준 인구는 55,000명으로 36.6%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강진, 해남, 함평, 신안군 등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 유입과 목포시 산정동을 비롯한 13개동 및 무안군 무안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서의 인구이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이 지난 충남 내포신도시 경우도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기준 10,960명으로 10.9% 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청이전 후 조성된 신도시에 인근 시군에서의 인구 유입과 신도시에 포함된 읍면동에서 인구이동의 결과로서, 인근 시군의 경쟁력 약화와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때,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도 영주, 봉화, 문경, 의성 등의 인근 시군의 인구 유출이 예상되고,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0만 자족도시 건설이 인근 시군 인구 유입 또는 기존 지역내에서의 인구이동으로 달성된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북부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 달성과 영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인구증가 확산으로 이어지고,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원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전한 전남은 남악신도시, 충남은 내포신도시라는 신도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신도시 명칭을 공모하였으나, 안동과 예천지역의 대립으로 신도시 명칭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시명칭 없이 신도시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에 걸맞는 신도시 명칭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를 분리해 각각 역할 분담, 상호균형, 견제 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 상대방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전형적 기관대립형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참된 지방자치 구현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

위원회'에서는 2년여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의회의 기능·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우리 60명의 경북도의원들은 개개인이 자치법규 제정 주체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많은 정책 건의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반영한 실적과 그 결과에 의한 도정 발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회가 위상과 자존심을 앞세우기 보다는 상호 존중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비로소 모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도민의 복지와 경북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양분하는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양자 간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갈등 자체가 정책에 대한 것이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적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비능률적인 기능으로 작용하여 자치행정을 마비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의회와 집행부 공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의 갈등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대하여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충실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의 행정행위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도의회가 시류에 영합하고 여론에 편승해 단순히 집행기관의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됨을 직시하고,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300만 도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그리고 경북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경북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00만 도민의 염원으로 새 보금자리에 자리잡은 도의회가 옹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지사께서 직접 성실히 임해 주시고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며,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를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상주출신 이운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경북! 신도청 시대의 장중한 막을 올리고,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중순에 경북도청이 현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가히 북부권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청이전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가장 역점을 뒀야 할 도정은 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전을 위해 고생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미흡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동반이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 및 이전터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은 1953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일원에 약 800만㎡를 미국 공군이 설치하였다가, 197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공군이 전투기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초 2007년까지는 사격장 인근 토지에 대하여 안전지대 편입 제외를 통보하였다가, 2012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수탁하여 안전지대 확보를 빌미로 토지매수를 위한 보상절차를 통보하여 현재 사격장으로 확장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인근 낙동면, 중동면, 사별면 13개 마을과 의성군, 예천군 등 반경 10km 이내의 3,200여 가구 약 10,000여 명의 상주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주야간 전투기 사격비행 훈련과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겪어왔으며, 오발탄 및 불발탄 사고로 식당지붕이 뚫리고, 화상과 사망사고 및 폭격기 추락사고 등으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상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사격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추방추진위원회'를 2012년에 결성하여 추방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낙동 사격장 폐쇄 불가 방침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남의 젓줄인 낙동강 인근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피해는 상주시를 비롯한 사격장 인근 주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북도가 함께 걱정해야 할 심각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소관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의 일이라 수수방관해도 괜찮은 것인지 본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8일 상주시 일대 낙동강 지역을 '친수지구'로 지정(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514호) 함으로써 낙동강 공군사격장 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도의 뿌리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이 조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국방부 및 중앙정부에 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에서는 공군사격장 이전 후, 산업물류단지, 소프트웨어 IT산업, 관광단지 개발 등의 기존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차원에서도 낙동강 유역의 기존공간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예천공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신도청 시대를 맞아 국토 중부와 남부의 중간지대에 입지한 도청 신도시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및 충청권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안동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외 항공운송 환경도 저비용 항공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등 국내외 항공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지방공항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공항의 경우 2010년 114만 8,000여 명에서 2015년 202만 7,600여 명으로 76.5% 증가하였으며, 청주공항의 경우 2010년 129만 6,800여 명에서 2015년 211만 8,400여 명으로 63.4%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19.0%), 무안(311%), 군산(17.6%), 원주(6.6%) 공항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항공수요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내 하늘길은 여전히 막혀있고, 그나마 포항공항의 경우에 2015년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잠정 폐쇄되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도청 신도시권이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권에 부족한 인프라가 공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최근 예천공항 재개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예천공항 민항기 재취항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천공항 세력권(주변 50km, 6개 시군)의 인구감소로 인한 항공수요 부족과 중앙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철도 등 육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장래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반항공사 취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 지방공항 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공항을 짓는 데도 수년이 걸리고 공항을 짓고 나서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래의 항공수요 예측만으로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공항 14개 중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뿐입니다. 결국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편의성 제고와 항공수요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하면서까지 지역의 하늘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제대로 된 공항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적 판단과 더불어 제2의 신경북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충북도청 인근의 청주공항의 경우, 2013년에 55억원 적자에서, 2013년에 51억원, 2014년 34억원, 2015년에는 9억원 정도의 적자로 올해는 아마도 흑자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국제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3개 광역시·도와 청주시가 협력하여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개별 조례를 통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수요와 연계한 항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항공수요를 유발시키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10년 앞을 볼 때 누군가는 10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도청 신도시권인 예천에는 이미 2002년에 국비 386억원을 들인 공항청사와 활주로를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6기 취임사에서 우리 경북을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과연, 하늘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경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신도청 시대, 우리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늘길 개척'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천 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경북의 뿌리이자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심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녹색혁명, 백색혁명, IT혁명을 거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기술보급사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농업연구 허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 북구 동호동 부지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이 새로운 터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하기관이 도청신도시로의 이전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특수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전문가들이 도농업기술원 이전의 주요기준으로

① 우수한 농업인프라를 갖춘 농업도시, ② 방대한 부지와 다양한 작목을 재배·연구할 수 있는 기후조건, ③ 기술 수요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 ④ 귀농·귀촌 선호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최적지에 도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의 부지는 본원과 시험장을 합하여 총 66만 5,407㎡(20만 1,638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도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서 시험재배 부지를 포함한 70ha(21만 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가 필수적인데, 도청 신도시 내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상주는 경북 최고의 농도(農都)입니다. 쌀, 오이, 배, 꽃감, 양봉, 육계, 한우 등 14개 농특산물 생산량은 전국 1위이자 경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면적은 2015년 현재, 2만 6,249ha로서 도전체 경지면적의 9.6%로 경북에서 제일 넓습니다. 전체 인구 중 농업 비중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를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북대 상주캠퍼스를 비롯하여 경북잠사곤충사업장, 경북도 감 시험장, 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등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 우수인력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상주는 대한민국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상주~청원 고속도로, 금년 말 개통예정인 상주~영덕 동서6축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을 갖추고 있어 중부 지방과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값이 비싼 도청 신도시 이전 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며, 최근에는 귀농 귀촌의 1번지로 지난 5년간 귀농 귀촌인은 1,580가구, 3000여 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떠나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 인프라와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으로 농업기술원 부지까지 갖추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기술원 이전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전국 최고인 농업기반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기술까지 접목된다면 농도경북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도청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반

성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농업기술원은 최적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외 관광객 적극적 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부문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패러다임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 쇼핑관광, 의료관광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국인들의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격적 마케팅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관광객 유치사업들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전국의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2013년도 1,280만 8,003명에서 2014년에는 1,462만 2,971명으로 증가하여, 14.2%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 경북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3년 56만 6,606명에서 2014년 31만 3,788명으로 오히려 44.6%가 감소하여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표 1〉 2013~2014년 주요관광지점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도	2013	2014
		계	318,820,874
경북	외국인	566,606	313,788
	내국인	30,009,328	34,012,491
전국	외국인	12,808,003	14,622,971
	내국인	275,436,937	293,405,109

또한,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 적극적인 방한관광 홍보와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중국과 동남아 시장으로부터의 관광객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기반한 한국관광은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국제관광객수에서 아시아지역은 2011년 766만 2,129명, 2014년 1,170만 8,565명으로 연평균 17.6%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미주와 유럽을 합한 증가세 14.9%보다 높은 증가세로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등 신흥국의 관광객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2〉 2011~2014년 주요국가별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계	9,794,796	11,140,028	12,175,550	14,201,516	
아시아	일본	3,289,051	3,518,792	2,747,750	2,280,434
	중국	2,220,196	2,836,892	4,326,869	6,126,865
	홍콩	280,849	360,027	400,435	558,377
	싱가폴	124,565	154,073	174,567	201,105
	대만	428,208	548,233	544,662	643,683
	필리핀	337,268	331,346	400,686	434,951
	그 외 아시아권	981,992	1,137,769	1,253,101	1,463,150
	계	7,662,129	8,887,132	9,848,070	11,708,565
미주(미국, 캐나다 등)	827,383	876,149	915,622	974,021	
유럽(프랑스, 영국 등)	681,025	717,315	768,185	848,530	
기타	624,259	659,432	643,673	670,400	

특히, 최근 중국이 세계 최대 해외관광 지출국가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도차원에서도 중국 요우커(遊客)를 타깃으로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2016년을 중국인의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대구시와 양해각서 체결 및 양 시·도간 광역

관광상품 개발, 해외마케팅 공동추진 등을 공동협력과제로 설정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선포를 통해 최근 중화권 관광객으로 제일 먼저 방문하는 홍콩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일례로 살펴보면, 관광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쇼핑관광 및 숙박 등은 대부분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경북은 주로 경주(불국사, 첨성대, 석굴암, 천마총 등) 문화유산 관람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속은 빠진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쇼핑 및 식도락 등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기존의 관광마케팅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하는 주된 목적은 여가, 위락, 개별휴가가 58.1%로 가장 높았고, 방한시 고려요인으로 쇼핑이 72.3%로, 자연풍경과 전통문화유산 답사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볼 때, 과연 경북도의 만리장성 프로그램이 관광시장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경북관광의 대부분이 경주에 집중되어 있어, 도내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관련 주요사업 내용도 해외수학여행단 유치,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유적지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개발 등 기존의 관광마케팅 프로그램만 되풀이하는 등 진부한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작 절실한 관광수입 확대 전략이 없는 사업들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급증하는 중국인 및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쇼핑 니즈를 반영하여 기존 관광지 중심의 시티투어 코스에 쇼핑 전용 코스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관광패턴이 문화 및 여가 관광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문화·레저 및 오락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 관광객 다변화에 따른 도차원의 국가별 마케팅 전략 수립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해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중국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관광객 다변화 및 동남아 등 주변국가로의 확대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청 부담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교육은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규모에 지나친 변화가 없어야 하며 교육 외적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보장받는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가 만 3~5세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새로운 지출부담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추경예산 포함)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의 지출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524억원으로 교육청 총세출예산 3조 5,171억원의 1.5%수준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 2,116억원으로 총세출예산 3조 9,279억원의 5.4%에 달하고 있어 약 3.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2013년 1,115억원, 2014년 149억원, 2015년 272억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노후 시설 및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예산 역시 2013년 396억원, 2014년

84억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직업교육 예산 역시 해마다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도교육청 지방교육채를 2014년 213억원, 2015년도에 6,711억원 발행하였으며, 2016년에 3,952억원을 발행예정으로, 2016년 현재 지방교육채 잔액이 8,931억원에 달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미약한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초중고 교육의 핵심 목표를 저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도교육청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1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대상자는 만3세~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아닌 보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린 유아들이 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 수 없겠으나, 도교육청 정책들의 제1대상자라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의 축소 등을 감수 하면서까지 제2대상자들이라 할 수 있는 누리과정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교육의 중심에는 초중등 교육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경북도교육청은 보육을 위해 초중등 교육의 차질이 우려되는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에 있어서도 교부금 배분기준이 학교수 비중이 감소하고 학생수 비중이 증가되고 있어, 연평균 약 3,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누리과정을 통한 어린 아이들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열악한 지방 교육청 재정확보 및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재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어린이집)의 완전한 통합을 통한 누리과정 사업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청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총리실 직속에 두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리과정 예산 및 교육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소요되는 여타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예천출신(예천군2)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래 경북발전의 터전이 될 신도청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김관용 도지사과 올바르게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회가 진정한 역할을 하고자 함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경북도는 도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간선도로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 어디든 90분 내로 더 가까워진 신도청을 표방하며, 신도시로의 교통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장래 예상되는 추가적인 교통수요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확충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안동에서 신도시로 진입하는 6차로는 지난해 9월에 이미 완공되었고, 예천에서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올해 8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주~영덕고속도로 서의성IC에서 신도청간 진입로인 지방도 912호선과 927호선의 4차로 건설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에서 신도청을 연결하는 지방도 916호선과 남안동IC에서 신도청을 연결하는 지방도 914호선은 장기계획으로 개량할 예정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표〉 진입도로 확충 관련

(단위 : 억원)

노 선	구 간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7개	-	L = 70.9km	12,589	-
안동~신도시	국도34호선~신도시 (지방도914호선)	5.0km/27.5m	808	2013.2. ~2015.9.
예천~신도시	예천소재지~신도시 (지방도927호선)	8.5km/19.5m	1,063	2014.4. ~2016.8.
예천~도청	국도28호선~신도시 (기타도로)	4.6km/25m	510	2020년까지 (2단계사업)
의성~도청	구담~신도시 (지방도927호선)	1.9km/25m	140	
중앙고속 도로~도청	남안동IC~신도시 (지방도914호선)	0.5km/25m	38	
안동터미널 ~도청	안동터미널~신도시 (기타도로)	14.2km/25m	3,200	2027년까지 (3단계사업)
산업도로	중부내륙(상주)~ 신도시	36.2km/25m	6,830	

출처: 경북도 자료

본 의원은 지방도 916호선의 확포장 및 선형 개량의 시급함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916호선은 김천시 아포읍에서 시작되어 안동시 풍산읍에서 끝나는 지방도로 구미, 김천, 성주, 고령 등 서부권에서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도 916호선이 서부권에서 도청신도시로 가장 단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확충 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다만, 2027년까지 6,8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주에서 도청신도시를 연결하는 산업도로 건설이 3단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예정한 대로 추진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서 거리가 먼 남동부나 동해안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상주, 김천, 구미 등 서부권에서의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권에서 도청신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우회해서 문경, 상주, 예천방면을 통하거나, 상주에 도착해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도 916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서부권에서 도청신도시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넘게 소요되어 서부권 주민의 불편이 매우 극심합니다.

한편, 안동방면에서 도청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지난해 10월에 완공되어 원활히 소통되고 있지만, 도청신도시 예천방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지부진하여 연기되고 있습니다.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예천읍에서 신도청소재지까지의 차량 소요 시간이 15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접근성이 높아져 도청신도시로의 인구의 유입과 조기정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현재 도청신도시 예천방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50여 %의 공사 진도에 머물고 있어, 금년 8월 완공이 가능할지 걱정이 큼니다.

본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과 조기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진입도로망 구축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 김천, 성주, 고령 등 서부권에서 도청신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성방면 진입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도 28호선 지보에서 신도청까지 직결도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예천방면 진입도로 현장을 둘러본 바,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향후 공사 관련 민원발생이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에 완공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도청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천방면 진입도로를 8월까지 완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화장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화장률이 52.6%로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매년 높아져 2014년에는 화장률이 79.2%에 다다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의 화장률은 43.3%에서 66.6%로 20%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13.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화장률 통계(2014)

(단위 : %)

구 분	'01	'05	'10	'14
전 국	38.5	52.59	67.5	79.2
경 북	27.5	43.30	52.8	66.6

출처: 경북도 통계자료

현재 화장은 가족구조 변화, 사후관리 용이, 매장 공간 부족 등의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도내 시군별 화장률(2014)

(단위 : 명, 건, %)

시군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률
계	20,304	13,514	66.6
포항시	2,817	2,316	82.2
경주시	2,046	1,568	76.6
김천시	1,193	777	65.1
안동시	1,473	746	50.6
구미시	1,484	1,131	76.2
영주시	986	612	62.1
영천시	946	656	69.3
상주시	1,172	712	60.8
문경시	773	505	65.3
경산시	1,404	1,025	73.0
군위군	307	165	53.7
의성군	872	480	55.0
청송군	350	164	46.9
영양군	259	111	42.9
영덕군	515	361	70.1
청도군	584	346	59.2
고령군	373	219	58.7
성주군	491	270	55.0
칠곡군	699	486	69.5
예천군	554	218	39.4
봉화군	384	204	53.1
울진군	545	373	68.4
울릉군	77	69	89.6

출처: 경북도 통계자료

한편, 2014년 경북의 사망자수는 20,304명이며, 이중 화장건수는 13,514명으로 화장률은 66.6%이었습니다. 시·군별 화장률을 살펴보면, 울릉군 89.6%, 포항시 82.2%, 경주시 76.6%로 높게 나타났고, 예천군 39.4%, 영양군 42.9%, 청송군 46.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평균 화장률은 68.2%,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평균 화장률은 64.4%로,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화장률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보다 화장률이 4% 정도 높았습니다.

2016년 3월 현재 도내에는 9개 시·군에 10개소의 화장시설에 30기의 화장로가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에는 아직도 화장시설이 없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표 2〉 도내 화장시설 이용료 현황 (2016. 3)

(단위 : 기, 원)

시 설 명	대표자	설치 (확장) 연도	화장로수	이 용 료	
				관 내	관 외
10개소			30		
포항우현화장장	포항시장	1941	3	50,000	400,000
포항구룡포화장장	포항시장	1978	1	40,000	320,000
경주 하늘마루	경주시장	2012	7	150,000	700,000
김천시화장장	김천시장	1964	2	50,000	400,000
안동시영면원	안동시장	1972	3	50,000	400,000
영주시화장장	영주시장	1972	2	50,000	350,000
상주시승천원	상주시장	2011	3	100,000	500,000
문경시예송원	문경시장	1982	3	50,000	600,000
의성군공설화장장	의성군수	2014	4	100,000	400,000
울릉군추모공원	울릉군수	2008	2	20,000	40,000

※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은 경산, 칠곡, 구미, 청송, 영덕, 울진, 영양, 군위, 봉화, 고령, 성주, 예천, 영천, 청도 등 모두 14개 시·군임.

본 의원이 2016년 3월 현재 대인 기준으로 도내 화장장 사용료를 살펴본 바, 관내거주자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 관외거주자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70만원으로 거주지에 따른 가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 주민은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의 주민보다 화장시설 이용료를 최소 2배~최대 12배나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경시예송원의 경우 관내거주자의 화장장 이용료가 5만원인데 비해,

관외거주자는 60만원으로 12배나 비쌌습니다. 한편 시·군간 화장장 사용료는 울릉군 추모공원이 4만원인데 비해, 경주하늘마루화장장은 70만원으로 무려 1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화장시설 이용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군위군은 2014년부터 1년 이상 군내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망자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성주군도 대구나 김천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화장장려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의 화장장이 없는 시·군들은 주민이 인접 지역의 화장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간 협의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림〉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 사업개요

- 위 치 : 안동시 풍천면 도청이전지 내 장사 1블록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4년간)
- 사업규모 : 연면적 5,673.5㎡, 부지 32,150㎡
- 주요시설 : 화장로 5기, 유택동산, 유족대기실, 매장, 사무실 등
- 사 업 비 : 254억원(국비 71, 도비 75, 안동 78, 예천 30)
- 추진현황
  - 2012. 12.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협약(MOU) 체결
  - 2014. 9. 공사계약 및 착공
  - 2016. 2. 공사진도 65%
  - 2016. 6월중 준공 예정

한편,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장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54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도청 이전지에 안동종합장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현재 65%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도내 화장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개선된 점이 없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화장시설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화장장 이용료가 시·군간 최대 17배,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 간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장장 사용료가 시·군 및 거주지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장례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시·군 및 거주지에 따라서 화장장 사용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수준의 이용료를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경북도민이면 모두가 동일한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내 화장시설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례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찾기도 어렵고 예약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동장사문화공원 완공에 맞추어 도민들이 도내 10개소의 화장시설 정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한 눈에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경상북도장사시설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신도시 내 안동종합장사공원이 올해 6월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지역주민과 입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안동종합장사공원의 조속한 완공과 함께, 현재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장시설 관련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도민의 장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후변화대응 농어업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자연환경, 농어업생산에 변화를 초래하고 인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2배나 높아 아열대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과수작물은 재배지 변동으로 생산량 및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경북의 농업환경도 점차 변하고 있어, 아열대의 열대과일 재배가 증가하는 반면, 사과 등 기존의 과수재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2014년도 아열대과수 재배현황조사' 자료와 '2015년 도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788여 농가에서 백향과, 파파야, 키위 등 20여 종의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353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 도내 아열대과수 재배현황

(단위 : 호, ha)

품 목	농 가 수	재배면적
계	788	353.11
블루베리	481	226.9
체리	138	57.6
아로니아	70	28.4
백향과	34	20.48
무화과	18	4.1
패션프루트	8	2.8
한라봉	5	2.9
참다래	4	2.2
키위	4	2.6
밀감	2	0.4
파파야	2	1.0
인디안바나나	1	0.3
구아바	1	0.1
플럼코트	1	0.1
애플망고	1	0.23
여주	1	1.6
기타	2	1.4

출처 : 경북도 친환경농업과(2014.7)자료와 도농업기술원(2015)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반면에 지역대표 과일인 사과는 그 명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014 과수 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18,981ha로, 1995년 재배면적 34,770ha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 경북산 사과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어업 등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주시는 잦은 비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꾀감 생산에 차질을 빚어 생산량의 35%인 3,620t을 폐기하여 434여 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포항특산물로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구룡포 과메기도 건조가 되지 않아 폐기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양계의 경우도 고온 다습한 기후로 육계와 산란계가 폐사하는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지속적인 수온 상승으로 주요 어종인 명태·도루묵이 사라지는 등 어족자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적조현상은 매년 수억원의 양식장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수온 상승으로 인한 동해안의 어족자원 변화와 적조피해는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표〉 시도별 적조피해 현황(2010~2015)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418	-	-	44	247	74	53
충 남	5	-	-	5	-	-	-
전 남	62	-	-	32	1	1	28
경 남	315	-	-	7	220	65	23
경 북	36	-	-	-	26	8	2

출처: 경북도 통계자료

지금 아열대농작물은 매년 현황과약을 해야 할 만큼 재배가 보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명암은 극명하게 갈려 아열대 과수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의 과수작물 재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농어민의 자발적 적응 노력과 함께 도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비한 농어업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아열대 기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과 등 전통적인 주요 과수작물 재배는 감소하고, 아열대과수 재배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비한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보급, 영농관리, 관련시설 지원, 판로 확보,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후변화대응과,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등 관련부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관련 전담부서의 신설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피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도내 농축산업과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함께 중장기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데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  
행정구현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신청사에서 처음 개최되는 회기에 도정질문을 위해 발언대에 서고 보니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 이곳으로 입지가 결정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었습시다만 8년여 만에 이전을 잘 마무리하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교육청 이전도 함께 차질없이 추진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업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이 완료된 지 이제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만 아직 정주여건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출퇴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제반여건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부권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지역균형 개발』에 관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46년전 면서기로 공직을 시작할 당시 영양군의 인구가 7~8만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전 1만 8천명 선이 붕괴 되어 약 40여 년만에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리 진행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공직에 몸 담으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것 중 한가지가 과연 낙후된 북부지역이 언제쯤이면 발전에 속도가 붙을까? 마지막으로 울진부군수직을 수행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북부권 발전에 대한 생각을 하시(何時)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북부지역의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 비하여 경쟁력 있는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인구를 늘리고 경북형마을 영농육성 등 농촌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살맛나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각종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알찬기업을 유치하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SOC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왔으나, 지리적 여건과 인구 규모, 경제여건 등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차등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은 항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의원 지역구인 영양군의 예를 든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2015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TV 퀴즈프로에 문제로 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으며, 지금도 국도 4차로와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가 없는 그야말로 육지속의 교통섬, 기반시설 사막지대라 하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의 수도가 북부지역으로 옮겨옴에 따라 부족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SOC 기반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이들 시설의 확충은 지역 발전의 선도적 요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조건이며 인구 유출과 감소를 막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 면단위에는 1년 내내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북부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도의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북부권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어떠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서 9축과 남북7축으로 간선도로망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서4축 고속도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이와 더불어 남북간 물류교류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까지 계획되어 있는 남북6축 도로사업이 조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항상 수요 부족이라는 논리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과 경북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영양에서 입암 구간 국도 31호선입니다. 이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매우 불량해서 잦은 낙석과 결빙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도내 모든 시·군이 20분 이내로 고속도로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영양군만 35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 2월 22일부터 도청과 의회 직원들의 첫 업무를 시작으로 안동 신도청 시대가 열렸습니다. 도청이 대구 포정동, 산격동

시대 120년을 마감하고 이제야 경북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청 이전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신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청 신도시는 2009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계획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15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2022년까지, 3단계 추진은 2027년까지가 목표입니다. 과연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지 앞서 조성중인 타 지역 신도시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라남도 남악신도시를 보겠습니다. 남악신도시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인구 15만명을 목표로 목포시 옥암·석현동과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도청이전은 2005년 10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전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인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30% 수준인 5만명을 겨우 넘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 3단계 개발이 현재 늦어지고 있으며, 전입인구를 보면 인근 목포시에서 60% 정도 유입되어 가장 많았고 광주에서는 고작 8%에 그쳤습니다. 이런 연유로 목포시의 원도심은 활력을 잃은지 오래 되었으며 서너 집 건너 한 집 꼴로 상가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목포시와 무안군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보면 이전한 첫해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9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서 도청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전 공공기관도 모두 75곳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4개 기관만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충남 내포신도시를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삼교읍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며, 도청이전은 2013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등으로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태부족하여 이전 3년이 지났음에도 계획인구의 10% 수준인 1만여 명 정도입니다.

이전 10년차 남악신도시와 3년차 내포신도시의 현 상황을 보면 우리 신도시의 미래청사진도 보일 것입니다. 과연 밝다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남악신도시로 이주한 주민의 약 60%가 인근 목포에서 옮겨왔고, 내포신도시의 경우도 홍성군은 수치상으로 인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홍성·예산읍 지역민의 신도시 이동에 따른 현상으로 인근 지역의 공동화 현상만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의 성패를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 산하기관, 협력업체의 동반 이주만을 전제로 해서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여 이를 얼마나 극대화하여 완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시설과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만 보고 떠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주변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신도시 자체 활성화도 어렵다고 봅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구유입이 공공기관 직원들과 인근 지역에서만 유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신도시의 매력에 끌리도록 하는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조성이야말로 지사님의 마지막 남은 임기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행정구역 통합 문제, 수도권과 세종시 및 도내 시·군과의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문제, 자족도시로의 대표 산업 육성 문제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연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배를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바탕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명, ‘이준석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마비된 인성 때문에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본 법의 입법 취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성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많은 이견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분석한 결과, 인성교육을 위한 목표로 제시한 8대 가치를 보면 예절, 효행,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었습니다. 당시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들 인성이 부족하여 참사를 당했습니까? 배 밖에 있던 어른들이 이러한 인성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상당수 청소년들이 크게 의아해 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정녕 학생들이 수궁하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총기사고가 가장 잦았던 1994년 인성교육과 유사한 연방 법이 제정된 바 있었습니다. 많은 주정부에서 청소년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학교개선법, 인성확대법 등으로 명명하여 시행하였지만, 2010년 연방정부 보고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인성평가진단법'을 보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거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라는 설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아니다' 사이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을 우롱하는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인성은 가르치거나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적·체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보다는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더라도 법적·체제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경북도는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통해 매달 한번씩 어르신을 찾아가 뵙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노인정책을 넘어 조손간의 인식차 회복을 통해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모가 조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성교육의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또한 핵가족화로 상실된 인성교육의 기능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스스로 기르도록 조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은 금과옥조 같은 성현의 말씀이나 규범을 내면화 하는데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학교생활 종합 지침서가 되는 생활본에 기본 생활습관 체험을 위한 나의 다짐, 행동강령 등과 같은 실천점검표를 포함하여 매주 내지 매월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점검하는 활동이 학교생활에 기본 축이 되도록 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동기유발과 변화를 느끼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학생들 스스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수련회를 통한 극기훈련, 생활관을 통한 기본 예절지도, 복지시설 방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내용 개발, 효 일기쓰기와 효행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가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등 형식적 체험활동이 아닌,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정부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했었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연간 4시간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한 달에 1시간도 받기 싫다는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정규과목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창’인 우리 경북에서 종전 처럼 연간 15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VII. 5분 자유발언

□ 2016년 3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수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소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공시설은 7~80년대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소하천, 세천, 구거 등에 설치한 농로, 낙차보, 소교량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집중호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사고발생 이후에도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위험시설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사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호우시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명사고 및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2차피해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03~'12년) 피해액만도 무려 8,400여억원에 이르고 있고, 복구에도 1조5,000여억원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후 땀질식 복구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도내 세천, 소교량, 세월교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규모도 23개 시·군에 2,5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도 8,600여 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의 지역구인 성주군의 경우 2012년 태풍 “산바” 내습으로 소규모시설 145개소에 41억원의 피해와 76억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농경지 유실과 매몰, 농작물과 가옥 침수 등 사유재산의 피해도 상당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잠시 몇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성주군 금수면 후평1리 노산 세천의 집중호우에 따른 제방이 유실된 사진입니다.

최근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하천과 배수펌프장 등 대규모 공공

시설 위주의 재해예방사업에만 집중 투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도 함께 투자하는 균형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15년 7월 24일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올해 7월 25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위험시설의 지정과 관리 등을 체계화 하는 등, 정비되지 않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의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도가 낮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더불어 김관용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들께서도 관련대책 마련 및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도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3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도내 어르신을 위한 교통지원대책 마련 촉구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노인을 한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 공경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문화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의 효(孝)사상과 경로사상을 인류의 가장 숭고한 사상이라고 극찬하는 등 경로효친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철도와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의 교통요금, 공원과 고궁 등의 공공 시설 이용요금, 목욕과 이발 등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경로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복지제도에서조차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이 큼니다.

지하철(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노인복지로서, 지난 1980년 요금 50% 감면을 시작으로, '84년 법 개정을 통해 무임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무료이용 혜택의 대부분이 지하철이 소재한 수도권 및 대도시 등 특정지역 노인(어르신)들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지하철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현실은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지역의 노인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경북지역만을 놓고 보았을 때, 지하철이 있는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북도내 전역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교통수당이 기초연금에 포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어르신들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이 대도시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무료이지 않느냐”고도 할 것이나, 노인들이 단지 지하철 이용을 위해 삶의 근거지를 떠나 대도시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며, 따라서 지하철 이용률이 극히 미미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노인빈곤율’이 49.6%(2015년, OECD보고서)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지역의 노인 가구는 거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비율인 ‘절대빈곤율’이 39%로 도시지역(4.4%)보다 9배나 높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이동을 위해 무료의 지하철이 아닌 유료의 버스와 택시 등에 교통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 비해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인이, 소득이 더 많은 대도시 지역의 노인보다 더 많은 교통비용을 지불하는 아이러니(Irony)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어르신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복지의 혜택이, 거주지의 차이로 인해 소외되고 희생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타 시도의 노인 교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영동군에서는 군내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15.9월)하여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만명(17.3%)으로 전체 도민의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로우대의 취지에 따라, “도내 어르신들에게도 대도시 지하철 무료이용의 혜택에 상응하는 경북도 차원의 어르신 교통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며,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인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일 것입니다. 도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에 세심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3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사업에서 제외된 울진~(봉화) 분천간 철도 건설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사업은 충남 서산(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총연장 340km로 8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서해안의 신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고 동·서간 내륙 산간지역 신규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신 성장 거점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울진~(봉화)분천간 철도 건설 계획은 2006년 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에는 반영되었으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과 2016년 상반기에 수립중에 있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도 33.1km의 내륙에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은 수도권이나 내륙지역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물론 철도교통에서 육지속의 섬으로 남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국가정책과 경북도 정책에 불신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진은 원자력발전소 6기(전국 30%)가 가동중에 있으며, 예정된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대한민국 최대의 원자력 발전단지로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의 에너지 산업의 핵심적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울진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내륙에서의 교통망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울진~분천간 철도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그 타당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울진 ~ 분천간 철도건설과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울진~분천간 철도 건설 사업은 첫째, 수도권과 남부내륙선(김천, 성주, 고령, 진주, 거제 등)과 중앙선(도담~영천), 삼척과 포항을 잇는 동해선이 울진에서 연결되어 철도를 통한 일관된 수송체계와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둘째, 경북순환철도 구축 즉 'O-Train'이 완성되어 상주·김천·구미의 서부권, 대구를 비롯한 포항·경주·영천 등 남부권, 안동·영주·봉화의 북부권을 동해안의 울진·포항 등으로 연결하여 경북 내륙의 유교문화권, 신라문화권, 해양문화권, 울진 금강송 숲을 연결하는 산림문화권이 아우르는 관광순환철도의 완성으로 이어져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셋째, 김관용 도지사께서 추진하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세종시 및 도청신도시와 함께 울진까지 연장되어 한반도 허리경제권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완성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울진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울진~분천간 철도건설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육성사업(5대 핵심과제)에 도청신도시와 세종시를 잇는 107km의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충남 보령과 도청신도시를 거쳐 포항을 잇는 동·서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울진이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의 종착점이 되고, 동·서 고속철도의 경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단계부터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3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문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동남권 주민들의 신도청 접근성 문제와 관련》

건설소방위원회 포항 출신 박문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도청사가 안동·예천으로 이전됨에 따라 줄지에 교통의 오지로 전락한 100만 동남권역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곳에서 신도청 시대를 시작하기 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도청 이전의 대업을 훌륭히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건상 매우 민감한 시기임에도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주신 지사님과 심사위원 여러분의 용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과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702년 전인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 경상도가 개도한 이래, 영광과 좌절이 점철된 도도한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경상북도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대사를 지나 산격동 시대 50년을 마감하고, 이곳 안동·예천에 새로운 신도청 시대를 개막한 것은, 700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대역사(役事)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청사 이전 연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시행착오와, 청사 이전에 있어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신도청으로의 이전은 2008년 6월 8일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처럼 우여 곡절 끝에 오늘에 이르른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려 8년여의 긴 기간이 있었는데도 신도청으로 향한 접근성 문제는 가히 낙제점 정도의 평가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8년 전 도청 이전이 결정되는 순간, 제일 먼저 전 도민이 늦어도 70~80분대 정도로 신속하게 신도청에 당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상식이자 기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북 행정수요의 1/3이 집결된 100만 동남권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지사님의 도정 경영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략 2시간 남짓이면 서울도 갈 수 있음을 감안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의 모든 도로를 다 이용하더라도 2시간 10분 이내로는 신도청까지 도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 어떤 설명으로도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포항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도 31호선에서 길안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공정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아무리 빠르게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2021년 전에는 개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포항, 경주 시민들이 이용할 포항(경주)-영덕-안동(신도청)의 경우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과 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에 착공 예정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공정이 겨우 5%밖에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공정관리가 또 어디에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신호등과 교통량의 과다로 거북이걸음을 방불케 하는 현실 인데도, 동해안권 주민들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는 듯 방관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항-죽장-안동(신도청)코스는 규정 속도로 휴식 없이 달려도 2시간 17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영덕-안동(신도청)까지 고속도로만 정상적으로 완공되면 1시간 23분이면 신청사까지 당도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이런 문제들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지금의 모든 현안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과제들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지속될 경우, 동남권 주민들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시간적 손실로 인해 사나워질 민심을 달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강대한 로마제국의 시작은 거미줄 같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12년 ‘아피아 가도(Via Appia)’를 필두로 지구를 두 바퀴나 돌고도 남을만한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로마제국은 마침내 세계 최고의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왜 필요한가’를 시사하는 결코 적지 않는 역사적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도청사로 향하는 불편한 접근성 문제로 동남권 100만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특단의 조치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6년 3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독도 도서관 건립 관련》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릉군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자국 땅에 강제로 포함시키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철저히 왜곡된 역사관으로 점철된 고교 사회과 교과서 27종을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향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가능성도 부정하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행동거지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침탈야욕에 대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와 300만 경북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일본의 제국주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경상북도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최선의 실효적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05년 2월 22일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우리의 땅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부화뇌동한 시마네현은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더니, 2007년에는 시마네현 제3청사 2층에 '다케시마' 홍보와 연구를 총괄하는 「다케시마 자료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 자료실」 운영을 위해 16명의 비상근 연구원으로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름도 없는 기관에 불과했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자료실」과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리와 홍보자료는 어느새 일본 중앙정부의 노골적인 독도침탈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이와 같은 노력에 부응하여 일본정부가 시마네현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다케시마 자료실」의 독도관련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보존하고자 할 정도로 일본 독도연구의 핵심기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시마네현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 다케시마 역사관을 개관하고, 다케시마 조사 시설을 건립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더니, 오키섬에 일본 자위대 배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이 이처럼 일본 독도정책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북의 독도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망동(妄動)이 있을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경북의 독도정책은 독도가 고유한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거와 자료를 준비하고, 일본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연구활동과 역사인식을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부여된 공적 권한이며,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경상북도의 이러한 책무를 무겁게 느끼면서, 본 의원은 독도수호를 위한 경상북도 독도정책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본의 독도영토침탈 야욕에 맞설 수 있는 논리와 주장을 이끌어 갈 전문기관으로서 경상북도 독도도서관이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비정기적 자료 구입과 기증에 의존하고 있는 독도 자료 수집을 체계화하고, 독도관련 자료를 연구하여 정책과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독도도서관은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응하여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를 축적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독도지킴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독도의 역사를 규명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실질적 연구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2015년 3월에 경상북도가 독도 정책과 홍보에 대한 자문을 위해 13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가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15년에 경상북도 독도정책에 대한 자료집과 건의서를 제출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역량이 강화된 독도위원회가 도민의 참여 속에서 독도도서관과 함께 독도 수호정책을 만들어낼 때 독도수호를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도내 시·군청 4곳에 불과한 독도 실시간 영상제공시설을 도내 모든 시·군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독도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1,468개소가 있습니다만, 독도를 관할한다는 경상북도 내에는 31개소뿐입니다. 그나마 관공서는 13개소에 불과합니다. 도내 시·군청 등 모든 관공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민이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독도의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여러분, 독도는 대한민국의 기상이며, 대한민국 근대사의 증인입니다.

독도수호를 위한 경상북도의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 례 안( 7건) .....	109
<input type="checkbox"/> 결 의 안( 1건) .....	141



## 二 조 례 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감면·추징 등에”를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100분의 20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100분의 40

② 삭제

제4조의 제목“(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35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본문 중 “휴업 중이거나 폐업”을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산업단지·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제1항·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율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4제1항제3호”를 “제47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2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제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감면

**제2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정)**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 주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공동 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 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 나.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바.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 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사항
- 아.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 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

**제3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
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6.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의 결정
7.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제2항2호 및 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
3.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통보 받은 즉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신고 및 사업완료후 지원금 지급신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모범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관리실태가 모범적인 공동주택단지(이하 “모범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중 6명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범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와 모범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수	
	주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청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내용	비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체 부담액		
<p>「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관리주체 (인)</p> <p>경상북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li> <li>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li> <li>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li> <li>4. 공법 및 공정표 1부</li> </ol>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청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내용	비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체 부담액		
<p>「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관리주체 (인)</p> <p>시장·군수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공 전·후 사진 1부</li> <li>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li> <li>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li> </ol>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원 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하며,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를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보수교육과정”을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제1항의 수강료”로 한다.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당해 개강일”을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으로 하며, “납입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수강료 불반환)을 제2조제4항으로 하고,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조 례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u>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수강료)</b> ①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에서 규정한 징수 금액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p> <p><b>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b>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u>납입하게 함으로써</u> 징수한다.</p> <p><b>제4조(수강료 불반환)</b>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p> <p><b>제5조(수강허가의 취소)</b>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b>제1조(목적)</b> —— <u>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u> ——  <u>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u> ——</p> <p><b>제2조(수강료)</b> ① <u>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u> ——</p> <p>② 제1항의 수강료 ——</p> <p>③ ——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 ——  <u>납입하여야 한다.</u></p> <p>④ ——</p> <p><b>제3조(수강허가의 취소)</b> ——</p>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안의 본칙 아래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 ----- --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수강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제3조(수강허가의 취소) (개정안과 같음)  (신설)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지정·운영)**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비징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3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2조 중 “시험”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조제목 “(수당의 종류)”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를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감시 수당”을 “시험감독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 “면접·실기시험 수당”을 “면접·실기채점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시험보안관리수당

제4조는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원이 위촉을 받아”를 “위촉위원이”로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여비 정액표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가목”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u>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u>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적용범위)</b>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b>제3조(수당의 종류)</b>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략)</li> <li>5. 감시수당</li> <li>6. 면접·실기시험수당</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b>제4조(수당)</b>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p> <p><b>제5조(여비)</b>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촉을 받아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여비 정액표의 제3호 해당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1조(목적)</b> <del>_____</del>  <del>_____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del>  <del>_____</del>  <del>_____.</del></p> <p><b>제2조(적용범위)</b>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del>_____</del>  <del>_____</del>  <del>_____.</del></p> <p><b>제3조(수당)</b>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li>5. 시험감독수당</li> <li>6. 면접·실기채점수당</li> <li>7. 시험보안관리수당</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b>제4조(여비)</b> <del>_____</del> 위촉위원이 <del>_____</del>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가목 <del>_____</del>.</p>

경상북도 초등학교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수강료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 3. 15.

제 안 자: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에서 부칙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나 향후 조례의 시행 시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골자

- 개정안에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함

3. 참고사항 : 없음

## 二 결 의 안

-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 1. 주 문

-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중 오늘날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 6. 30.일까지 연장한다.

### 2. 제안이유

-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5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자치법규 정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활동과 조사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나.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의정 활동 보고서

(제283회 임시회)



2016. 5. 인쇄 / 2016. 5.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